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의안 번호	1958
----------	------

2020년 12월 2일  
운 영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.10.16. 김춘례 의원(찬성자 이은주 의원 외 9명)

나. 회부일자 : 2020.10.26.

다. 상정 일자 : 제298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

- 2020년 12월 2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 가. 제안이유

- 현행 회의규칙 제49조은 회의록을 시디롬으로 제작해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, 이미 시의회 홈페이지 내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통해 회의록을 제공하고 있어 시디롬 배부 사업의 실효성이 사라졌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함(안 제49조제1항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###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임시회와 정례회 등 매 회기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디롬을 제작해 의원에게 배부해오던 방식을 전자회의록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됐음.

### 2 회의록 배부 방법 조정(안 제49조제1항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72조1)제4항에 따르면,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각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임.
- 현행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제49조제1항에 회의록은 시디롬으로 제작해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는 매 회기 종료 후 회의록을 시디롬으로 제작해 의원에게 직접 배부해 오고 있으나, 전자회의록을 비롯한 영상회의록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록을 시디롬으로 제작·배부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임.
- 이에 본 개정안은 의원에게 배부하는 회의록 제작·배부 방식을 기존 시디롬에서 전자회의록의 형태로 같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

1) 제72조(회의록)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
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, 시디롬 제작 예산('20년 기준 약 110만원)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 시디롬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다만,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	제49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_____. _____ _____ _____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- 참고로, 광주광역시의회(회의규칙)와 전라북도의회(회의규칙)에서도 본 개정안과 같이 회의록 배부는 전자회의록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국회를 비롯한 나머지 광역의회는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.<sup>2)</sup>

**3 종합 의견**

- 본 개정안은 매 회기 종료 후 의원에게 배부하는 회의록을 시디롬으로 제작해 배부하던 방식에서 전자회의록으로 같음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, 관련 예산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는 등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.

<sup>2)</sup> 국회(국회법) 및 광역의회의 회의록 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(회의규칙)은 붙임 참조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6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8명 전원 찬성)

7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 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#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(김춘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95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김춘례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은주, 박순규, 노승재,  
김종무, 김혜련, 유정희,  
이광성, 송정빈, 노식래,  
안광석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현행 회의규칙 제49조은 회의록을 시디롬으로 제작해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, 이미 시의회 홈페이지 내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통해 회의록을 제공하고 있어 시디롬 배부사업의 실효성이 사라졌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함(안 제49조제1항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 호

##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1항 본문 중 “회의록 시디롬은”을 “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49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</p> <p>① <u>회의록 시디롬은</u>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다만,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49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</p> <p>① <u>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